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과학화·고도화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통신의 녹음 보존기간 연장(안 제10조)

선박교통관제관서 등에서 60일간 보존해야 하는 관제통신을 관제시설 기술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제시설 기술개발의 추진·지원에 관한 세부절차(안 제12조)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제시설의 성능향상 및 국산화 등을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부분으로 이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다.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권한 위임(안 제14조)

해양경찰청장의 관제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단서 중 “**심판**”을 “**심판, 법 제23조에 따른 기술개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술개발의 지원**)”을 “(**기술개발의 추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2. 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현장적용에 관한 사항
4. 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개발된 기술의 관제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
2.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관리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 ③ (생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의 조사 및 <u>심판</u>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관제통신 녹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심판</u> , 법 <u>제23조에 따른 기술개발</u> ----- ----- ----- -----.
제12조(<u>기술개발의 지원</u>) <신설>	제12조(<u>기술개발의 추진 · 지원 등</u>) ① <u>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u> 1. <u>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u> 2. <u>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 평가 · 관리에 관한 사항</u> 3. <u>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현장적용에 관한 사항</u>

<신 설>	4. 관제시설 기술개발 사업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 체계 를 구축할 수 있다.
<신 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계획 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 설>	1. 개발된 기술의 관제시설 적 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 지 원에 관한 사항
<신 설>	3.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에 관 한 사항
(생 략)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른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⑤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다. 1. (생략) <u><신설></u> <u>2.</u> (생략) ② (생략)	----- --. 1. (현행과 같음) <u>2.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설치·관리</u>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연 락 처	(032) 835-2785